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06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신성범 · 조은희 · 서천호
김위상 · 최수진 · 송석준
김예지 · 박덕흠 · 박성훈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학업·취업·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창업·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착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해당 지역 내 취업·창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의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 알선
2. 지역 내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역량 및 한국어 교육 지원
3. 주거·문화·행정서비스 연계 등 지역생활 정착을 위한 정주 지원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거주 및 이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체·기관 등과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착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해당 지역 내 취업·창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1. 지역의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 알선</u> <u>2. 지역 내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역량 및 한국어 교육 지원</u> <u>3. 주거·문화·행정서비스 연계 등 지역생활 정착을 위한 정주 지원</u> <u>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거주 및 이동 현황을 정기적으로</u>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체·기관 등과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